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
------	----

제출년월일 : 2006. 11. 1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6.23)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옥외광고업 휴·폐업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안 제31조)

(1)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등록기준 강화(안 제31조제1항)

- 옥외광고제작업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 옥외광고대행업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안 제31조제2항)

나.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 : 2006. 9. 12 ~ 10. 2 실시결과 의견없음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1)(라)·(2)(라) 및 동호나목(1)(라)·(2)(라)·(3)(라)의 과태료란중 “금액”을 각각 “금액이하”로 하고, 동표의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마. 1년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00만원

별표 5의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평창군 일원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u></p> <p>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u></p> <p>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 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관계 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6호]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06.6.23>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기술능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